

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(운영 규정 내용 발췌)

조항	항목	세부 내용
1조	목적	노인성질환 어르신을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하며 평일 주야간 및 주말 맞춤형 케어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인지기능 회복을 돕고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2조	이용 대상	① 노인성질환자로서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 ② 가정에서의 보호가 불가피하여 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등급외자
6조	구비서류	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건강진단서 각 1부(전염성 질환 유무 확인서) ⑤ 복용약의 처방전 사본 1부 (해당자) ⑥ 치매진단서(해당자) 또는 소견서 1부 ⑦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1부(해당자)
8조	계약 기간, 만료 및 해제	① 이용계약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발생하며,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 ② 계약은 이용자의 해약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. ③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, 다만,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. ④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내부 회의를 거쳐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며,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. ⑤ 이용자가 서비스기간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증상 및 이상행동이 현저하여 시설이용 및 이용에 있어 적응이 어려울 경우, 내부회의를 거쳐 센터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중도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. ⑥ 센터는 이용자의 상태가 급변하여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용자의 욕구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, 내부회의를 거쳐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중도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.
9조	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	①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며 급여의 일정비율을 본인이 부담(0%~15%)하되, 1개월씩 산정한다. ②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(급여 0%~15%, 비급여 100%)을 부담한다. 단,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용은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. ③ 월 한도액 초과 부분은 전액(100%) 본인이 부담한다. ④ 식사비와 간식비는 전액(100%) 본인이 부담한다. (식사비: 점심 4,000원, 저녁 4,000원, 간식:1,500원) ⑤ 월 15일 이상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'이용자'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%를 청구할 수 있다. ⑥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(월~금요일)을 기준으로 한다.
15조	보호자의 의무 및 권리	①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센터 측에 알려야 한다. ② 이용자와 보호자는 센터의 제반 규정과 일정을 지켜야 한다. ③ 보호자는 주·야간보호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 ④ 보호자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주·야간보호 서비스에 대해 의견 및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, 센터는 제시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 ⑤ 보호자는 송영 서비스 이용 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서비스 이용자 배웅과 마중을 한다. ⑥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더라도 지리적으로 송영 차량의 운행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송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.